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행정기본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II. 검토의견

- 안 제2조(「농지법」의 개정)는 「농지법」 제63조¹⁾ 이행강제금에

1)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

관한 내용을 「행정기본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안 제2조 중 ‘법률 제19877호 「농지법」’의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 방식과 관련하여,

법률 제19877호 「농지법」은 2025년 1월 3일 이미 시행²⁾되었고, 법률 제21798호 「농지법」이 2026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인데 동 개정안과 중복되는 개정조문이 있으므로 「농지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³⁾.

또한, 현행법 제42조의2⁴⁾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에 관한 사항도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서로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 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2024년 1월 2일 공포됨.

3) 이에 부합하게 부칙도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2024년 1월 2일 공포·시행됨.

현 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 정 의 건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한 다는 뜻을 미리 문 서로 알려야 한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처분 명령 또는 원상회 복 명령 이행기간 이 만료한 다음 날 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 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매년 1 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처분 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 령 이행기간이 만 료한 다음 날을 기 준으로 하여 그 처 분명령·원상회 복 명령 또는 시 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이행강 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 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 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 ⑥ (법률안 과 같음)

현 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 정 의 견
<u>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u> <u>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u>	<u>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u> <u>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u>	

현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정의견
<u>은 자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u>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u>	<u>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u> <u><삭 제></u>	

현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정의견
<u>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u> <u>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법률 제19877호</u> <u>농지법</u> <u>일부개정법률</u> <u>제63조(이행강제금)</u> <u>① (생략)</u>	<u><삭 제></u> <u>법률 제19877호</u> <u>농지법</u> <u>일부개정법률</u> <u>제63조(이행강제금)</u> <u>① (현행과 같음)</u>	<u>법률 제21798호</u> <u>농지법</u> <u>일부개정법률</u> <u>제63조(이행강제금)</u> <u>①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u>

현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정의견
<u>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u>	<u>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항과 같음)</u> <u>②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2항과 같음)</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u>

현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정의견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현 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 정 의 건
<u>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u>	<u>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u>
<u>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u>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현 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 정 의 건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	법률안 중 제2조 (「농지법」의 개정)	수정의견
<u>기간에 이의를 제</u> <u>기하지 아니하고</u> <u>제1항에 따른 이</u> <u>행강제금을 납부</u> <u>기한까지 내지 아</u> <u>니하면 「지방행</u> <u>정 제재·부과금의</u> <u>징수 등에 관한 법</u> <u>률」에 따라 징수</u> <u>한다.</u>		

(전문위원 최 기 도)